

## 학술연구기금 관리규정(3-6-7)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건양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교원의 연구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학술연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 관한 기본지침을 정하여 기금의 합리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관장) 기금의 관리업무는 기획처에서 관장한다.

제3조(기금의 구성) 기금이라 함은 재단 출연금, 외부기관 기부금, 연구 간접경비, 기타 수입금 등으로 연구 및 학술활동을 위하여 본교에 무상으로 후원된 재산을 말한다.

제4조(회계처리) ① 기금의 수입과 지출은 본 대학교의 세입과 세출 예산에 관한 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처리 한다

② 기금은 금융기관의 별도 계좌에 예치하여 총무처 경리팀에서 관리하되, 별도계좌 설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 될 수 있다.

③ 기금의 집행은 기획처의 집행절차에 따른다.

④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 수입 및 기타 수입은 제2항의 계좌에 적립한다.

제5조(영수증의 발급과 사의(謝意)의 표시) 기금의 기부 시에는 총장 명의의 영수증을 발급 할 수 있으며,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의(謝意)를 포함 할 수 있다.

제6조(사용) 기금은 일정기간 적립하며, 기금 적립에 의하여 발생한 이자 수입 및 기타 수입금은 연구지원 및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에 사용할 수 있다.

1. 교내 연구비
2. 연구시설 유지 및 보수비
3. 연구 활동 지원 인력의 인건비
4. 학술 및 연구 활동 지원비
5. 기타 학술 연구 및 연구 활동의 지원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

제7조(연구지원 및 평가심의위원) 연구지원 및 평가심의위원은 학문 계열별로 심사위원을 7인 이내의 조교수급 이상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기획처장, 간사는 기획처 연구담당으로 한다.

제8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다.

### 부 칙

이 규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이 규정은 2007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